

역(閾)의 세계

질레트코리아 과장 김영경

02) 3451-4526 young-kyungkim@gillette.com

역(閾)은 심리학에서 있어서 어떤 사실이 의식되느냐, 인되느냐의 그 경계를 말한다. 즉 경계면에 있는 지각이나 반응 또는 그때의 자극량인데 감각역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표상(表象)이 의식 밑에서 의식으로 떠 올라오는 경계를 의식역(意識閾)이라 하고, 느낄 수 있는 최소의 자극량을 자극역(刺激閾)이라 한다. 인간이 외계(外界)의 자극성을 감수(感受)하는 최소-최저의 한도(限度)를 말한다. 그리고 판별(判別)할 수 있는 자극의 최소 변화량을 변별역(辨別閾 : discrimination threshold)이라고 한다. 이것을 식별역(識別閾)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종류의 두 감각의 차이를 변별하는 자극의 최소량을 지칭한다.

역하(閾下)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의식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서 역(閾)보다 아래라는 뜻이다. 역하자극은 자극역보다 약한 자극을 가리킨다. 역하자극에 의하여 생기는 지각, 곧 역하지각은 이미 1900년 던랩(K. Dunlap)에 의해서 지적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뮐러 리아(Müller-Lyer)의 착시도(錯視圖) >·<, <·>의 화살의 밝기를 약하게 하여 역하로 하여도 아직은 착시효과가 인정되는 것 곧 ><를 단

편이 <>를 단 것보다 길게 보이는 것을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그후 오랫동안 믿어지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실험에 의해서 오늘날 그 존재가 뚜렷하게 입증되게 되었다.

착각(錯覺)은 외계의 사물에 대한 지각의 착오를 말한다. 여기서 착각지각을 나누어 환각(幻覺)과 착각으로 부른다. 환각은 외부의 자극이 전혀 없고 완전히 주관적으로 성립되는 것이지만, 착각은 자극이 있는 하나 그 질 또는 양이 그릇되게 지각되는 것을 지칭한다.

심리학에서는 말초성(末梢性) 착각과 중추성 착각으로 나누며, 전자는 착오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감각 그 자체의 착오된 인상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를테면 대비(對比)에 의한 착각 같은 것을 말한다.

야스퍼스(K. Jaspers)는 중추성 착각에 부주의성·정서성(情緒性)·상상 착각과 같은 3가지 종류를 들고 있다. 그중에서 부주의에 의한 착각은 주의를 함으로써 보정(補正)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공포나 불안이 있을 때에 마른 나무가 귀신

처럼 보이는 것 등은 정서성 착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상상착각이라 함은 불명료한 자극을 상상으로 보충하는 것이다. 그리고 양을 나타내는 착각에서 유명한 것은 기하학적 착시(錯視) 현상이다.

기하학적 착시(幾何學的錯視)는 평면 도형의 크기가 길이 방향 형태 등의 기하학적 관계가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다 우리가 대개 말하는 시각적인 착각이며 보통 사람에게 흔히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을 잘못 본 착시(錯視 : optical illusion)는 시각의 착각인데, 일종의 평면도형(平面圖形)의 기하학적 관계이다. 즉 크기가 방향 각도 등에 관한 <기하학적 착시>, 동일도형(同一圖形)에 있어 두 종류의 지각이 교체적으로 나타나는 <반전착시(反轉錯視)>, 태양이나 달이 지평선 가까이에서 크게 보이는 <달의 착시>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착어증(錯語症)은 어디까지나 언어도착증(言語倒錯症)인데 일종의 언어장애(障礙)로서 보통 실언증(失言症)에서 생긴다고 한다. 단음(單音)을 혼동하여 음절(音節)의 발음을 잘못 하든지, 음절을 혼동하여 말(word)이 형성되지 않든지, 혹은 말과 말을 혼동하든지 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착오(錯誤)는 민법상 의사표시자가 내심(內

心)의 의사와 표시행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있음을 감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상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시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표시자는 자기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며 취소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착오는 형법상으로는 관념(觀念)과 사실의 불일치를 말하는데, 첫째로 법률의 착오가 있다. 범인이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무죄라고 믿고 어떤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오인(誤認)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것으로서 벌하지 아니한다.

둘째로 사실의 착오이다. 범죄사실에 관한 착오를 말한다. 어떠한 사실의 착오가 고의(故意)를 조각(阻却)하는가에 관하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설(說)이 있었는데, 형법은 사실의 착오로써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한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하며,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